

< 주요 변경 대비표 >

1. 변경대상 투자신탁 및 변경 문건:

No.	펀드명	구분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간이설명서
1	슈로더코리아알파증권투자신탁 A(주식)	자펀드	○	○	○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7년 1월 13일(금)

3. 주요 변경사항:

[1] 신탁계약서

- 환매수수료 일괄 면제 적용
- 종류 추가: 종류 F 정의 일부 수정, 변액보험클래스(V) 및 연금저축 클래스(C-P, C-Pe, S-P) 추가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2.종류 F 수익증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신설 (종류 추가) 1.종류 A 수익증권 2.종류 F 수익증권 3.종류 I 수익증권 4.종류 W 수익증권 5.종류 S 수익증권 6.종류 C-CP(퇴직연금)	2.종류 F 수익증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1.종류 A 수익증권 2.종류 I 수익증권 3.종류 F 수익증권 4.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5.종류 W 수익증권 6.종류 S 수익증권 7.종류 S-P 수익증권 8.종류 C-P 수익증권 9.종류 C-Pe 수익증권 10.종류 C-CP(퇴직연금) 수익증권
제 10 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추가) 1.종류 A 수익증권 2.종류 F 수익증권 3.종류 I 수익증권 4.종류 W 수익증권 5.종류 S 수익증권 6.종류 C-CP(퇴직연금)	1.종류 A 수익증권 2.종류 I 수익증권 3.종류 F 수익증권 4.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5.종류 W 수익증권 6.종류 S 수익증권 7.종류 S-P 수익증권 8.종류 C-P 수익증권 9.종류 C-Pe 수익증권 10.종류 C-CP(퇴직연금) 수익증권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 39 조(보수)	신설 (종류 추가)	4.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7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0.04%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7.종류 S-P 수익증권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7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6%</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8.종류 C-P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7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0.9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9. 종류 C-P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7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0.47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제41조 (환매수수료)	<p>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종류 A 수익증권 - 90일미만: 이익금의 30%</p> <p>종류 F 수익증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종류 I 수익증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종류 W 수익증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종류 S 수익증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종류 C-CP(퇴직연금) 수익증권 - 없음</p>	<p>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p>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p>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③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④, ⑤항 (내용 생략)</p>	<p>③ 삭제</p> <p>③, ④항 (조항 변경, 내용은 현행과 동일)</p>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종류S-P, C-P, C-Pe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

[2] 투자설명서

- 환매수수료 일괄 면제 적용
- 종류 추가: 종류 F 정의 일부 수정, 변액보험클래스(V) 및 연금저축 클래스(C-P, C-Pe, S-P) 추가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데이터 정기 갱신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5. 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6. 나.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 추가)	업데이트 V(변액보험) 클래스 자본시장법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가입한 고객에 한함 C-P 클래스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가입자에 한함 C-Pe 클래스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제2부. 11. 나. (3) 환매수수료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F,I,W,S 수익증권 -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CP(퇴직연금) 수익증권 - 없음	없음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신설 (종류 추가)	V(변액보험) 클래스 자본시장법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가입한 고객에 한함 C-P 클래스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가입자에 한함 C-Pe 클래스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천만원 수수료 및 보수 비용 예시표	신설 (종류 추가)	업데이트 V(번액보험) 클래스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75% 판매회사보수율: 연 0.04%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총보수비용: 연 0.85% S-P 클래스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75%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6%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총보수비용: 연 1.066% C-P 클래스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75% 판매회사보수율: 연 0.95%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총보수비용: 연 1.76% C-Pe 클래스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75% 판매회사보수율: 연 0.475%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총보수비용: 연 1.285%
제 2 부. 14. 나. 과세 (4)	신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S-P,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제3부. 1. 재무정보		업데이트
제3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1.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3] 간이투자설명서

- 환매수수료 일괄 면제적용,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데이터 정기 갱신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I. 보수		업데이트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환매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S 수익증권 -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5. 투자실적추이		업데이트